

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2서식] <신설 2024. 7. 17.>

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

일련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결격사유	판정 연월일	장애 정도

「철도안전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기관의 장

직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